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시 국세·지방세 신속 감면〉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54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시 국세·지방세 신속 감면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향엽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30.
3. 회부연월일 : 2026.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임.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 선정 지연 및 절차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적인 선정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시 국세·지방세 신속 감면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내복귀기업지원법”)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 법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 ----- ----- ----- <u>국내</u> <u>복귀기업</u>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정의규정상 ‘국내복귀기업’은 「국내복귀기업지원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하며,

「국내복귀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르면 해외사업장 축소 및 국내사업장 신·증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복귀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원대상 선정절차를 거쳐 조세감면(§11¹⁾), 보조금·보증공급(§12)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현행법 제16조는 이러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²⁾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업종 및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는 경제자유구역 내 추가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상을 정책적으로 선별하려던 취지로 보이나,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하는 모든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 별도 선정절차 없이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이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입주시 별도 선정절차 없이 조세감면 대상이 되므로,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입주유인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1. 지역 간의 균형발전
2.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3.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

이 제고되고 지역일자리 거점인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국정과제(49-5. 첨단산단·연구개발특구·경제자유구역 등 일자리 거점 육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동 개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재정경제부³⁾는 개별법에 국세감면을 규율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6

3) 관계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	의견 주요내용
재정경제부 (‘26.4.20)	<수용곤란> -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 세제지원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삭제 필요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규정 가능*하며, 주기적 평가를 거쳐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와 상충 *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조특법 §3①) -개별법에 세제지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세제지원이 불가능하고,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필요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세제지원이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근거 규정을 둘 실익도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및 관세감면에 대해 별도로 규정 중(조특법 §104의24·§118의2) - 과거 상임위 단계 부처의견 확인 절차 누락 등으로 세제지원 관련 내용이 법률 제·개정 시 포함된 경우라도 해당 법률 개정 시 동일한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및 체계와 충돌하므로 삭제 필요